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06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.

발 의 자:김예지・김소희・구자근

박덕흠 · 서미화 · 최수진

신성범・김선교・김 건

장동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에서 노인 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강제로 묶거나 격리시키는 등 학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학대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제1항제6호라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6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수급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	제37조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
소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	소 등) ①
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	
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
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	
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	
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2호	
의2, 제3호의5, 제7호, 또는 제8	
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	
을 취소하여야 한다.	<u>.</u>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	6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. 다만,	
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	
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	
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	
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	
우는 제외한다.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라. 수급자를 격리시키거나
	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

<u>라.•마.</u> (생략)

7. · 8. (생략)

② ~ ⑨ (생 략)

하는 행위

<u>마.•바.</u> (현행 라목 및 마목 과 같음)

7. · 8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⑨ (현행과 같음)